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90
------------------	------

제출년월일 : 2006. 7.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며, 피해보상기준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함(제3조, 제4조)
-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5조, 제6조)
-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며,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조사함(제7조, 제8조)
- 읍·면·동장은 현지조사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함(제9조)
- 농작물 등 피해보상은 동일지역에 년2회에 한하여 피해경작자 1가구당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로 함(제10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7846호 : 2006.1.11]
- 야생동·식물보호법 [법률 제7678호 : 2005.8.4]
-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049호 : 2005.9.14]
-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83호 : 2005.9.27]
-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7438호 : 2005.3.31]
- 농지법 [법률 제7775호 : 2005.12.29]
- 농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78호 : 2005.7.2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 : 2005.8.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92호 : 2006.1.26]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144호 : 2005.11.30]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붙임 : 1. 근거법령(발췌분) 1부.

2.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및 대책 1부.
3.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역 안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임산물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보상하여 농업인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과 임산물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산지, 그리고 산지와 인접한 전·답에서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과 임산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임산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의2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과 임산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묘지 및 인·축 피해 기타 시설물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산정기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피해보상 업무관련 주무실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산림녹지과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 · 환경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피해보상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피해보상 신청)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과 임산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읍 · 면 ·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사실 조사) 피해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피해정도를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에 의거 자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농가 및 마을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 ①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현지 조사 후 자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한도) 농작물과 임산물의 피해보상은 동일지역에 년2회에 한하여 피해경작자 1가구당 30만원이상 최대 300만원까지로 한다.

제11조(피해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과 피해임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면적이 330m²미만인 경우(다만, 인삼의 경우 피해면적이 165m²미만인 경우)
3. 총 피해면적이 330m²이상이라도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과 임산물을 재배한 경우
5. 단순1회성 통과·체류에 의한 피해 등 경미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핸드폰 :)		
피해 상황	피해지역	제천시 읍·면·동	리	변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피해보상 신청사유 및 피해내역 1부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피해보상 신청사유 및 피해내역

1. 피해보상신청사유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보상 신청.

2. 피해발생경위

- 가해야생동물명 :
- 가해야생동물수 :
- 가해시기 :
- 가해방법 :

3. 피해내역

피해지역			피해자 성명	지적 (m ²)	피해면적 (m ²)	피해 작물	피해 정도	피해액 (원)	비고
읍면동	리	번지							
계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소재지				
보상 대상자	성명		연락처	
	주소			
보상금	원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인)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1.11 법률 제7846호)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 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정 2005.9.14 대통령령 제19049호)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올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②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제정 2005.9.27 환경부령 제183호)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뗏비둘기, 고라니, 뗏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오리류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를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을 제외한다)
5. 문묘를 훼손하는 뗏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내역서
 -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3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의2. “산림작물”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을 말한다.

농지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7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6 대통령령 제19292호)**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44호)**

제4조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주택복구
-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관련)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비 고
(2)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 생화 및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 및 침수피해 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종 묘대·묘목대 및 종균대를 지원한다.

※참고사항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및 대책

□ 2005년도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민원발생건수 : 353건
- 피해 예상면적 : 691ha (논·밭 250ha, 과수 441ha)
- 피해 예상액 : 약 917,467천원 정도
- 가해야생동물 : 고라니, 맷돼지, 노루, 까치, 너구리, 비둘기, 토끼, 오리, 꿩, 직바구, 청설모, 다람쥐, 까마귀 등
- 피해 농작물 : 콩, 고추, 옥수수, 사과, 벼, 오이, 배추, 무, 수수 등

□ 2006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 대책

- 피해예방시설 지원
 - 동물퇴치용 폭음기 대여 (사업량 : 30대 / 사업비 : 6,000천원)
 - 피해농가 의견 수렴 후 방수망 또는 전기울타리 보급 예정(사업비 : 9,000천원)
- 유해야생동물자율구제단 운영
 - 운영기간 : 2006. 6. 14. ~ 09. 30.
 - 구성인원 : 29명
 - 사업비 : 14,006천원
-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 년중 실시(총기, 올무 등)
- 수렵장운영
 - 운영기간 : 2006. 11. 1~2007. 2. 28
 - 사업비 : 27,080천원

제천시공고 제 2006 - 711호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05월 19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며, 피해보상 기준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함(제3조, 제4조)
-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5조, 제6조)
-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며,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조사함(제7조, 제8조)

- 읍·면·동장은 현지조사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함(제9조)
- 농작물 등 피해보상은 동일지역에 년2회에 한하여 피해경작자 1가구당 30만원이상 최대 300만원까지로 함(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전화(043)640-5614, 팩스(043)640-560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고해관	윤기선	전급 06/30 오성관			

결과보고서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06.05.19. - 2006.06.08.
3. 예고방법 : 제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4. 제정조례안 내용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5.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결.